

#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31回平昌郡議會

第 2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 1995年 4月 17日(月) 14時20分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1. 平昌郡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關한條例案
2. 平昌郡農地改良組合區域外農地改良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
3. 平昌郡公職者倫理委員會委員推薦의件
4. 第31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 附議된 案件

1. 平昌郡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關한條例案(韓榮一議員外6人發議) —— 2 面
2. 平昌郡農地改良組合區域外農地改良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平昌郡守提出)  
\_\_\_\_\_ 4 面
3. 平昌郡公職者倫理委員會委員推薦의件 (平昌郡守提出) \_\_\_\_\_ 4 面
4. 第31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_\_\_\_\_ 5 面

(14時20分 開議)

○ 議長 韓榮一 : 좌석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1回 平昌郡議會(臨時會)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오늘로써 이번會期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有終의 美를 거둘수 있도록 會議 進行에 적극 協調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平昌郡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關한 條例案(韓榮一議員外 6 人 發議)

(14時21分)

○ 議長 韓榮一 : 그러면 議事日程 第1 項 平昌郡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關한 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議題를 發議하신 議員을 代表하여 金鍾永 副議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鍾永 : 金鍾永 議員입니다. 平昌郡 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 關한 條例案에 對한 提案理由를 說明하겠습니다.

地方自治法 第133條및 老人福祉法 第4條 와 第12條의 規定에 근거하여 國家社會 發展에 기여한 老人들의 自立基盤 造成 과 福祉增進에 必要한 基金을 造成하고 基金을 效率的으로 運營管理함으로써

老人의 自助 自活能力을 開發하여 자가 保障능력을 增進하고 地域社會의 복지기 能을 強化하려는데 있습니다.

그 主要骨子로는 老人의 自立基盤 造成 과 育成을 위하여 基金을 造成하고 이의 效率的인 運用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며 基金은 地方自治團體의 出捐金 各級機關團體, 支援希望者가 寄託하는 誠金品및 財産, 基金 運用으로 생기는 利子및 收益金으로 造成합니다.

基金은 利率이 높은 金融機關에 豫置 하고 支援金은 基金의 利子收益金의 범 위내에서 支出토록 하며, 基金은 老人福祉 增進을 위한 事業, 傳統文化 宣揚, 老人問題 相談所 運營, 各급 老人會 管 理運營支援, 노인능력은행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노인교육과 충효교실운영, 社 會奉仕活動 參與와 指導, 老人의 健康과 趣味活動에 使用합니다.

基金運營委員會는 8人 이내 委員으로 構成하고 支援對象 事業의 基本計劃 수 립에 關한 事項과 基金의 運用및 決算 에 關한 事項을 審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關係 法規를 잠깐 紹介드린다면, 地方自治法 第133條에 보면 財産및 基金의 設置로 되어 있습니다.

第1項에는 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公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保有하거나 特정한 資金의 運營을 爲한 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고 明示되어 있으며, 第2項에는 第1項의 財産의 保有, 基金의 設置,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條例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老人福祉法 第4條를 보면 福祉增進의 責任입니다.

第1項에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진다로 明示되어 있으며, 第2項에는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福祉에 關한 施策을 강구함에 있어서 第2條의 規定된 基本理念이 구현되도록 努力해야 한다고 明示되어 있습니다.

參考로 한가지 더 添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條例는 '94年度에 江原道에서 이미 制定되어 條例施行에 必要한 事項을

規則으로 정하여 施行하고 있으며, 道內市.郡에서는 우리郡에서 가장 먼저 發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條例案에 대한 자세한 事項은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條例案이 이번會期에 꼭 通過되어 老人福祉基金이 設置될 수 있도록 期待하면서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 參 照 >

· 平昌郡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關한 條例案

( 끝에 실음 )

○ 議長 韓榮一 : 金鍾永 副議長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提案說明을 들은바 있는 議題에 대하여 質疑나 討論하실 議員 계시면 發言申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소리가 없음 )

안계시면 質疑와 討論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地方自治法 第123條의 規定에 의거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意見を 듣도록

되어 있으나, 本件에 대해서는 지난 4月 13日 書面으로 平昌郡守의 意見을 接受하여 그內容을 지금 議席에 配付하였기 이로써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本議題에 對한 審議節次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表決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表決을 起立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平昌郡 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 關한條例案에 對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贊成하시는 議員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起立 6名 )

앉아 주세요.

( 着席 )

다음은 反對하시는 議員 안계십니까?

( 起立議員 없음 )

表決結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在席議員 7名중 贊成 6名으로 平昌郡 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에 關한 條例案은 地方自治法 第5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平昌郡農地改良組合區域外農地改良 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平昌郡守提出)

(14時 27分)

○ 議長 韓榮一 :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平昌郡 農地改良組合區域外農地改良 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案件을 建設課長이 提案說明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不出席하여 提案說明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平昌郡農地改良組合區域外農地改良 施設管理條例廢止條例案은 審議를 保留코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그럼 本 條例案은 審議가 保留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平昌郡公職者倫理委員會委員推薦의件 (平昌郡守提出)

(14時 29分)

○ 議長 韓榮一 :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平昌郡公職者倫理委員會委員 推薦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件은 平昌郡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 및 運營에 關한 條例 第2條 第3項의 規定에 의거 지난 4月 10日 平昌郡守로부터 平昌郡 公職者倫理委員會 委員으로 推薦된 本郡議會 議員이 지난 3月 28日 辭職함에 따라 空席中인 委員 1人을 다시 推薦하여 缺位를 要求하여 議員中에서 1人을 推薦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議員間 事前合議된대로 金鍾永 副議長을 推薦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第31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 議員選出의件 (議長提議)

(14時30分)

○ 議長 韓榮一 :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第31回 平昌郡議會 臨時會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件을 上程합니다. 會議錄 署名議員은 地方自治法 第64條 第2項과 平昌郡議會 會議規則 第46條에 의거 朴容泰議員, 金樂雲議員을 이번

會期의 會議錄 署名議員으로 選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이번會期에 計劃된 모든日程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제 2個月여 남은 임기동안 특히 健康에 유의하시고 온國民의 관심사인 4大地方選舉가 郡民의 신뢰 속에 公明正大하게 치뤄지도록 住民啓導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第31回 臨時會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第31回 平昌郡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 散會와 閉會를 宣布합니다.

( 14時30分 散會)

○ 出席議員

議 長	韓 榮 一
副議長	金 鍾 永
議 員	李 致 玉
議 員	朴 容 泰
議 員	朱 泰 元
議 員	金 樂 雲
議 員	郭 文 春

○ 出席公務員

副 郡 守	韓 琦 洙
企 劃 室 長	高 昶 植
家庭福祉課長	朴 靜 子

○ 議會事務課

事 務 課 長	權 赫 昇
議 事 係 長	咸 京 鎬

【 議 席 】

○ 議席表 ( 11 面에 실음)

##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20
----------	-----

제안년월일 : 1995. 4. .

발의자 : 한영일 의원의 6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3조및 노인복지법 제4조,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함으로써 노인의 자조. 자활능력을 개발하여 자가보장 능력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 하려는것임.

###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설치목적 (안 제1조)
- 나. 기금의 조성 (안 제3조)
- 다. 기금의 운용관리및 계획 (안 제4,5조)
- 라. 기금의 사용 (안 제6조)
- 마. 기금운영위원회 (안 제7,8조)

##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평창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평창군의 출연금
2. 각급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물품 또는 기타 재산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②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구좌(노인복지기금구좌 설치)로 납입 관리한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호, 예절등 전통문화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노인회(군지회, 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평창노인회보 발간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평창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군의회 의원 2인,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장 및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가정복지계장이 된다.

제8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관)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발 체 서

-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4. 3. 16 >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94. 3. 16>
  
- 노인복지법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 노인복지법 제12조(경노사업의 실시 지원)①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